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1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29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침례회 [redacted]교회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5. 7. 7. 선고 2014구합61331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3. 16.
판 결 선 고	2016. 4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9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,972,000원, 지방교육세 4,497,200원, 농어촌특별세 2,448,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11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○ 4면 7행의 "을 제1, 4 내지 7호증"을 "을 제1, 4 내지 7, 9호증"으로 고친다.

○ 4면 밑에서 5행의 "사실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 [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원고가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로 되어 있을 뿐 변경된 바 없다] 】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김경환

판사 정승규